

문 제

** 아래 문제의 근거를 묻는 질문은 법적 근거를 가리는 것입니다.

1. 사용자가 안전교육을 아침 조회로 대체하고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에 대한 대처와 근거는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해 관련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은 무엇이며, 대상은?
4. 검진, 측정 등에서 노동조합 참여의 근거와 한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5. 사고나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감독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6. 작업중지권의 발생시기와 행사자는 누구인가?
7.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요구하는가?
8. 역학조사의 요건과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9. 사측이 사고를 은폐하였을 때 법적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
10. 건강검진의 유형은 무엇이고 검사항목은 무엇인가?
11. 작업장에서 쓰는 물질은 무엇인지, 유해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길잡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은->규칙

※ 아래 길잡이에서 관련규정의 내용을 일일이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내용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이 내용을 아는 것만큼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1. 사용자가 안전교육을 아침 조회로 대체하고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에 대한 대처와 근거는?

1) 안전보건교육(정기,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특별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인 바, 이를 시행치 아니하고 조회로 대체하였다면 이는 교육을 이행치 않은 것이므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2)관련 규정

산안법

제5조 (사업주의 업무) ①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정책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5.1.5, 2002.12.30>

②.....

제31조 (안전·보건교육)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제72조 (과태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6.12.31, 2002.12.30>

...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

규칙

제3장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제33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34조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개정 1997.10.16>)0.16>

제35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등)

제36조 삭제<1995.11.23>

제37조 (교재등)

제4장 직무교육등

제1절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제38조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제39조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개정 1992.3.21>)

제40조 (직무교육의 면제)

제41조 삭제<1992.3.21>

규칙 별표

별표 8 [교육시간]

1.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제33조 제1항관련)
2.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교육(제38조 제2항 관련)
3.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제39조 제2항 관련)
4. 자체검사원 교육(제43조 제2항 관련)

별표 8의 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제33조 제1항 관련)
2.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교육(제38조 제2항 관련)
3.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제39조 제2항 관련)
4. 자체검사원 교육(제43조 제2항 관련)

*** 사업내 안전보건 교육 중 특별교육의 대상자는 시행령 별표 2[안전담당자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해 관련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1) 산보위는 100인 이상 (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중 50일이상 100인 미만)사업장내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법률로 규정된 노사 자치기구이다. 산보위의 운영 규정은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자체 내에서 규정할 수 있다.

2) 관련규정

산안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개정 1997.12.13>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등에 관한 사항

※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개정 1996.12.31>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⑦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72조 (과태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6.12.31, 2002.12.30>

.... 제19조제1항·제4항....,

시행령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제25조의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3 (위원장)

제25조의4 (회의등)

제25조의5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등의 처리)

시행규칙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영 제25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제25조의2 (근로자위원의 지명)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은 무엇이며, 대상은?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다음의 역할을 한다.

- ①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 ②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회의 입회
- ③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④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⑤ 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⑥ 직업성 질병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 ⑦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 ⑧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 ⑨ 안전보건교육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⑩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등 산업재해예방업무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한편 위촉의 대상은 규칙 제45조의 2에 의한다.

2) 관련 규정

산안법

제61조의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에 소속된 자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1999.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1]

규칙

제 45조의 2 (명예감독관의 위촉대상 등) ① 위촉. ② 업무

4. 검진, 측정 등에서 노동조합 참여의 근거와 한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1) 자체검사,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안전보건진단 등에서 근로자대표는 입회할 수 있다. 그러나 검진 및 측정에 대한 선정권, 합의권 등은 설정되어있지 않으며, 법 규정에서 정한 이상의 검진 및 측정 항목에 추가 등에 대한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 단체협약이나, 산보위 운영규정 등을 통해 이러한 선정권, 합의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관련 규정

산안법

제36조 (자체검사) ①...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체검사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개정 1996.12.31>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①...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1999.2.8, 2002.12.30>

⑤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제43조 (건강진단) ①...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02.12.30>

④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⑥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등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없이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12.31, 2002.12.30>

제49조 (안전·보건진단등) ...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개정 1996.12.31>

제72조 (과태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6.12.31, 2002.12.30>

4.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5. 사고나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감독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예방조치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계획 및 제 조항 준수에 관련한 감독 및 개선 명령권은 노동부장관에게 있다. 이때 실제 이것을 감독하는 것은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므로 법령 위반 고발 및 고소 뿐 아니라 영업정지, 사용정지, 작업정지, 위험요인의 제거, 방지계획, 안전 및 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등의 실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관련 규정

산안법

제4조 (정부의 책무) ①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1996.12.31, 1999.2.8>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재해다발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에 관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의 안전성 확보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의 작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4의2.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추진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관련단체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 ②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기타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1조 (감독상의 조치)

제51조의2 (영업정지의 요청등)

제52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67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3조제8항, 제34조제8항, 제35조제6항, 제38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 또는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6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2항, 제34조의4,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제49조의2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2.12.30>

4.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서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제72조 (과태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6.12.31, 2002.12.30>

2.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6.12.31, 1999.2.8, 2000.1.7, 2002.12.30>

2. 제10조의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제7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52조의8의 규정에 위반한 자
11.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규칙

제132조의2 (감독기준)

제133조 (보고·출석기간)

제133조의2 (사용의 중지)

제134조 (사용중지의 해제)

제135조 (작업의 중지)

제135조의2 (시정명령서의 게시)

제136조 (영업정지의 요청등)

6. 작업중지권의 발생시기와 행사자는 누구인가?

1) 작업중지권은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누구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일반적이고 당연한 수준에서 자신을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이것의 행사의 여부와 그 질에 따라 현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도 있다

2) 관련규정

산안법

제26조 (작업중지등)

제6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1.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요구하는가?

1) 사업장에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가 안전·보건 진단이다. 사업주의 임의 시행이 아닐 경우 노동부에 의해 실시됨으로 지방관서에 요구할 수 있다.

2) 관련규정

산안법

제49조 (안전·보건진단등)

제6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2. 제2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9조제2항 또는 제4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규칙

제126조 (대상사업장의 종류)

제127조 (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128조 (진단기관의 지정신청등)

제130조 (진단결과의 보고)

제131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등)

8. 역학조사의 요건과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1) 역학조사(疫學調査)란 질병의 원인과 그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을 조사를 말한다. 노동부장관은 직업병의 발생원인을 찾아내거나 직업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에 의해 직업병이 의심되거나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되어 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으로 그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 노동자 대표, 건강진단 실시 자, 근로복지공단(업무상질병유무결정 필요시)은 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관련규정

산안법

제43조의2 (역학조사)

규칙

제107조의 2(역학조사의 대상과 절차 등)

제107조의 3(역학조사의 실시기관 등)

9. 사측이 사고를 은폐하였을 때 법적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

1) 사고 및 직업병의 발생은 노동자에게 대단히 위협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은폐하려 한다면 현장에서의 문제폭로와 더불어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대처 역시 병행하여야 하겠다. 사업주는 재해 발생시 보고 및 기록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2) 관련 규정

산안법

제10조 (보고의 의무)

제10조의2 (산업재해기록)

제6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규칙

제4조 (산업재해발생보고)

제4조의2 (산업재해기록 등)

10. 건강검진의 유형은 무엇이고 검사항목은 무엇인가?

1) 건강검진은 채용시, 일반,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 등이 있으며, 검사항목 등이 관계규정에 적시되어있다.

2) 관련 규정

산안법

제43조 (건강진단)

제67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2. 제33조제8항, 제34조제8항, 제35조제6항, 제38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 또는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6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2. 제2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9조제2항 또는 제4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4.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6.12.31, 2002.12.30>

2.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6.12.31, 1999.2.8, 2000.1.7, 2002.12.30>

2. 제10조의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제7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52조의8의 규정에 위반한 자

규칙

제98조 (정의)

제98조의2 (건강진단의 실시등)

제98조의3 (건강진단의 실시기관등)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제99조의2 (건강진단 실시주기의 일시단축)

제99조의4 (건강진단실시시기의 명시)

제100조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제101조 (건강진단비용)

제102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제105조 (건강진단결과의 보고등)

제107조 (건강진단결과의 보존)

별표 13 -특수, 배치점,수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11. 작업장에서 쓰는 물질은 무엇인지, 유해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1) 작업장에서 쓰여지는 물질은 직접적으로 노동자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할 수 있으며 유해물질로 판명된 물질 뿐 아니라 성분이 밝혀지지 않은 물질을 경우 시료를 채취해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도 있겠다.

2) 관련 규정

산안법

제37조 (제조등의 금지)

제38조 (제조등의 허가)

제39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제40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제6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1.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67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제3항·제7항, 제34조제2항·제7항, 제35조제1항·제5항, 제38조제3항, 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3조제8항, 제34조제8항, 제35조제6항, 제38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 또는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2.12.30]

제6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9조제2항 또는 제4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7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41조제4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게시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0조의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제7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52조의8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고표식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제공하지 아니한 자

규칙

- 제81조 (유해인자의 분류·관리)
- 제81조의2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제81조의3 (유해·위험성평가대상 선정기준 등)
- 제81조의4 (유해인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제86조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의 제출)
- 제88조 (일반소비자 생활용의 유해·위험성조사 제외)
- 제89조 (소량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제외)
- 제89조의2 (그 밖의 유해·위험성조사 제외)
- 제89조의3 (확인 면제)
- 제90조 (확인 및 결과통보)
- 제91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제92조 (의견청취등)
- 제9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 제92조의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요령)
- 제92조의4 (경고표지의 부착)
- 제92조의5 (근로자에 대한 교육등)
- 제92조의6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 제92조의7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 제92조의8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별표-11의2 유해인자분류기준

- ※ 전체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13참조 바랍니다.
- ※ 각 공정 또는 작업에 관련된 예방 규정은 산업안전에 관한규칙,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